

제829호

무주 공보

2026. 9. 9.(수)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 행 : 무 주 군

편 집 : 기획조정실 (☎ 063-320-2226)

조 례

○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고 시

○ 무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10차 변경 승인 고시..... 11

무주군 공고 제2026 - 952호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9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26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기한 연장(3년)

- 1)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2)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3)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4)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5)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재무과 세정팀 우)55517
- 전자우편 : fighting72@korea.kr.
- 전화 : 063-320-2281
- 팩스 : 063-320-2289

4. 붙임

가. 의견서(서식)

나.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u>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u>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u>2029년 12월</u> <u>31일</u>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 또
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
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
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
정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
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 2029년 12월 31일
까지 100분의 50-----.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2. · 3. (생략)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 2029년 12월 31일 -----

-----.

1. · 2.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임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임주자에 대한 감면) -----

2029년 12월 31일-----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
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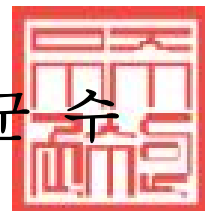
 2029년 12월 31일

무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10차 변경 승인 고시

우리 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시행계획 9차변경 승인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9일

무 주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무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무주읍 중심지의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농어촌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의 내용

구 분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기 초 생 활 기 반 확 충	반디 키움센터	• 문화 교육활동 장소 제공	세부내역 변경
	무주 청소년 키움센터	• 청소년 학습공간 제공	추가내역 반영
	반딧불 키움센터	• 생활문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추가내역 반영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 마을공동체 형성	추가내역 반영
	예비비	• 잔여예비 사업비	세부내역 변경
지 역 경 관 개 선	365-24 누구나 생활길	• 주요 공공시설 보행공간 정비	
	중심지 안심보행로	• 중심지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정류장개선사업	• 버스 대기공간 편의개선	

지 역 역 량 강 화	반디 키움 프로젝트	• 반디 키움센터 활성화
	통합예약 시스템	•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청소년 키움 프로젝트	• 청소년 키움센터 활성화
	반딧불 키움 프로젝트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반디 코디네이터 양성	• 서비스 전달 전담인력 양성
	사회적 공동체 양성	• 인재조직화 및 자립기반 구축
	중심지 거버넌스 구축	• 분야별 운영주체 조직화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 주민제안 마을공모사업 지원 컨설팅
	중심지 경영 지원	• 주민위원회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나. 사업의 구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읍내리, 당산리, 안성면 공정리 일원

4. 사 업 비 : 24,000백만원(국비 16,800백만원, 지방비 7,200백만원)

5. 사업기간 : 2019. 01 .01 ~ 2028. 02. 28. (9개년)

6. 사업의 효과

가. 중심지 내에 부족한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과 기존시설물과 연계 및
복합화 건립을 통하여 원스톱 생활서비스 제공

나. 주민들의 수요에 기반한 부족한 생활 서비스를 통하여 중심지의
기능향상 및 무주군민 삶의 질 향상

7. 사업시행자 : 무주군수(위탁수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촌활력과(063-320-276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가능

8. 주요사업 기능별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당초계획		변경계획		증(-)감		비 고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합 계			24,000		24,000	-	-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소 계		15,544		15,544		-	
	반디키움 센터	1,661㎡	6,963	1,661㎡	6,963	-	-	세부내역 변경
	무주 청소년 키움센터	354㎡	1,609	354㎡	1,618	-	9	추가내역 반영
	반딧불 키움센터	1식	1,078	1식	1,079	-	1	추가내역 반영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14세대	5,000	14세대	5,000	-	-	추가내역 반영
	예비비	1식	894	1식	884	-	-10	세부내역 변경
지역 경관 개선	소 계		2,189		2,189		-	
	365-24 누구나 생활길	616㎡ 2,202㎡	1,787	616㎡ 2,202㎡	1,787	-	-	
	중심지 안심보행로	1,890㎡	318	1,890㎡	318	-	-	
	정류장 개선사업	2개소	84	2개소	84	-	-	
지역 역량 강화	소 계		3,631		3,631		-	
	반디 키움 프로젝트	1식	634	1식	634	-	-	
	통합예약 시스템	1식	170	1식	170	-	-	
	청소년 키움 프로젝트	1식	180	1식	180	-	-	
	반딧불 키움 프로젝트	1식	1,497	1식	1,497	-	-	
	반디코디네이터 양성	1식	175	1식	175	-	-	
	사회적 공동체 양성	1식	196	1식	196	-	-	
	중심지 거버넌스 구축	1식	46	1식	46	-	-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1식	215	1식	215	-	-	
	중심지 경영지원	1식	518	1식	518	-	-	
시설 부대	기본·실시 설계 관리비 등	1식	2,636	1식	2,636		-	